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2. 5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구미시공설송조당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해
경사면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 산림에코센터 조성 사업으로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인 3대문화권 생태관광 기반
사업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낙동강 역사너울길 조성사업중
산림에코센터 조성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인 공사를 추진
하고자 하며,
- 신라 불교문화 초전지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고대 불교 전래 역사의 현장을 전승·보전하고, 불교문화의 전시·체험
공간 제공 및 첨단기술과 역사문화가 융합된 엔터테인먼트 공간 창출
을 통한 관광자원 가치의 극대화와 지역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취득재산】

- 토 지 : 79,036㎡(옥성면 초곡리 산11번지외 54필지)
- 기준가격 : 3,208,528천원 (가 감정가 기준)

□ 구미시공설송조당 토지 매입

○ 현 황

- 위 치 :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산6-1번지
- 시설규모 : 부지 - 1,580m² - (재)선산공원묘원
건물 - 1,160m² 2층슬라브 - 구미시
- 사 업 비 : 854백만원
- 공사기간 : 1999. 12 ~ 2000. 9. 30
- 주요시설 : 안치시설, 관리소, 주차시설 등
- 개 관 일 : 2010. 12. 20
- 안치현황 : 8,925기(안치규모 10,170기)

○ 취득재산 (용도:주차장)

- 위 치 :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산11번지외 2필지
- 면 적 : 2,285m²
- 기준가격 : 14,000천원 (가 감정가 기준)

□ 산림에코센터 토지 매입

- 위 치 :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259-1번지외 37필지
- 면 적 : 69,194m²
- 기준가격 : 2,473,720천원(가 감정가 기준)

□ 신라 불교문화 초전지 토지 매입(추가)

< 당 초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2011.12.23.)

○ 토 지 (취득)

- 면 적 : 31,444m²(답, 19필지)
- 예정가격 : 1,163,428천원(가 감정가 기준)

- 건 물 (신축)
 - 면 적 : 2,300m²(3동)
 - 예정가격 : 12,350,000천원(공사금액 기준)
- 편 의 시 설 (신축)
 - 면 적 : 1,100m²
 - 예정가격 : 540,000천원(공사금액 기준)

< 변 경 > : 추가편입

- 토 지
 - 위 치 : 구미시 도개면 도개리 352-1번지외 13필지
 - 면 적 : 14건, 7,557m²
 - 예정가격 : 720,808천원(가 감정가 기준)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4항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2 , 천원)

[illegible]

2012년도 관리계획변경 재산목록(취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천원)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매입시기	매입사유	매입재산 소유자 주소 · 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55필지	79,036	3,208,528				
취득	소계	14필지	12,692	429,791				
	임	옥성 초곡리 산11	1,281	7,848	2012년 상반기	공설송조당 공용 주차장부지조성	옥성면 밀양박씨찬성 공파초곡대종중	
	임	옥성 초곡리 산13	639	3,915	2012년 상반기	“	옥성면 강진석	
	임	옥성 초곡리 산14	365	2,237	2012년 상반기	“	옥성면 강경모	
	임	산동 인덕 259-1	436	12,164	2012년 상반기	산림에코센터 조성사업추진	경산시 이병락	
	전	산동 인덕 259-2	793	26,486	2012년 상반기	“	경산시 이병락	
	임	산동 인덕 274	93	3,032	2012년 상반기	“	산동면 이병호	
	임	산동 인덕 275	496	16,517	2012년 상반기	“	산동면 이병호	
	임	산동 인덕 277	664	22,111	2012년 상반기	“	산동면 이병호	
	전	산동 인덕 279	2,192	109,600	2012년 상반기	“	대구시 이병택	
	임	산동 인덕 281	3,283	108,339	2012년 상반기	“	황상동 김영미 안동시 최경동	
	유	산동 인덕 238	681	35,684	2012년 하반기	“	산동면 이용택	
	유	산동 인덕 239-1	975	51,090	2012년 하반기	“	산동면 이재춘	
	임	산동 인덕 248	298	11,920	2012년 하반기	“	부천시 이선규	
	전	산동 인덕 249	496	18,848	2012년 하반기	“	산동면 이정규	

2012년도 관리계획변경 재산목록(취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천원)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매입시기	매입사유	매입재산 소유자 주소 · 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취득	소계	14 필 지	24,300	1,241,051				
	전	산동 인덕 251	228	8,368	2012년 하반기	산림에코센터 조성사업추진	산동면 이용갑	
	유	산동 인덕 252	2,344	122,826	2012년 하반기	“	김해시 이병균	
	유	산동 인덕 253	684	35,842	2012년 하반기	“	김해시 이병균	
	답	산동 인덕 255	797	41,763	2012년 하반기	“	산동면 이옥자	
	답	산동 인덕 256	744	40,548	2012년 하반기	“	인의동 이병찬	
	전	산동 인덕 257	1,382	75,319	2012년 하반기	“	칠곡군 이삼춘	
	임	산동 인덕 258	625	18,750	2012년 하반기	“	산동면 이병호	
	답	산동 인덕 260-1	3,273	173,142	2012년 하반기	“	이병락	
	답	산동 인덕 260-2	2,169	115,825	2012년 하반기	“	황상동 김영미 안동시 최경동	
	답	산동 인덕 261	5,412	270,600	2012년 하반기	“	이형제	
	전	산동 인덕 262	2,033	101,650	2012년 하반기	“	대구시 김숙여	
	답	산동 인덕 263	2,172	104,256	2012년 하반기	“	김해시 이병균	
	답	산동 인덕 264	1,640	85,936	2012년 하반기	“	김해시 이병균	
	전	산동 인덕 265	797	46,226	2012년 하반기	“	이형제	

2012년도 관리계획변경 재산목록(취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천원)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 가액	매입시기	매입사유	매입재산 소유자 주소 · 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취득	소계	13필지	34,487	816,878				
	전	산동 인덕 266	569	31,295	2012년 하반기	산림에코센터 조성사업추진	산동면 김동순	
	전	산동 인덕 267	1,689	87,828	2012년 하반기	“	상주시 이병만 김해시 이병균	
	임	산동 인덕 268	278	9,730	2012년 하반기	“	부천시 이선규	
	임	산동 인덕 269	33	990	2012년 하반기	“	부천시 이선규	
	전	산동 인덕 272	83	4,150	2012년 하반기	“	부천시 이선규	
	전	산동 인덕 273	1,726	89,062	2012년 하반기	“	경산시 이용식	
	임	산동 인덕 278	314	9,420	2012년 하반기	“	대구시 이상제	
	임	산동 인덕 283	96	2,880	2012년 하반기	“	부천시 이선규	
	임	산동 인덕 284	139	4,170	2012년 하반기	“	산동면 이형제	
	유	산동 인덕 285	526	23,670	2012년 하반기	“	산동면 이형제	
	답	산동 인덕 286	3,540	172,752	2012년 하반기	“	황상동 김영미 안동시 최경동	
	임	산동 인덕 287	106	2,650	2012년 하반기	“	서울시 안성철	
	임	산동 인덕 산6	25,388	378,281	2012년 하반기	“	봉곡동 변우철	

2012년도 관리계획변경 재산목록(취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천원)

구분	재 산 의 표 시			재산가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취득	소계	14필지	7,557	720,808				
	대	도개면 도개리 352-1	222	30,303	2012년 하반기	신라불교문화 조전지조성 사업	도개면 도개리 212 문동열	
	답	도개면 도개리 352-3	225	10,530	"	"	"	
	대	도개면 도개리 353-1	387	52,825	"	"	"	
	답	도개면 도개리 354-1	228	10,670	"	"	상주시 남성동 74 여환승	
	대	도개면 도개리 354-2	552	75,348	"	"	도개면 도개리 324 조순금	
	대	도개면 도개리 352-2	608	82,992	"	"	도개면 도개리 314 김춘연	
	답	도개면 도개리 360-5	147	6,879	"	"	구미시 형곡동 4주공@ 409-405 김용환	
	대	도개면 도개리 360-6	63	8,599	"	"	"	
	대	도개면 도개리 360-3	569	77,668	"	"	포항시 북구 두호동 우방신천지타운 110-1403 길희준	
	대	도개면 도개리 360-4	329	44,908	"	"	도개면 도개리 346 심황섭	
	대	도개면 도개리 360-9	71	9,691	"	"	도개면 도개리 347 사단법인대한불교 조계종불타조사회	
	종교	도개면 도개리 360-2	1,431	139,522	"	"	"	
	대	도개면 도개리 361	704	96,096	"	"	구미시 형곡동 4주공@ 409-405 김용환	
	답	도개면 도개리 367-1	2,021	74,777	"	"	구미시 남통동 4-5 금오청구타운 106-301 성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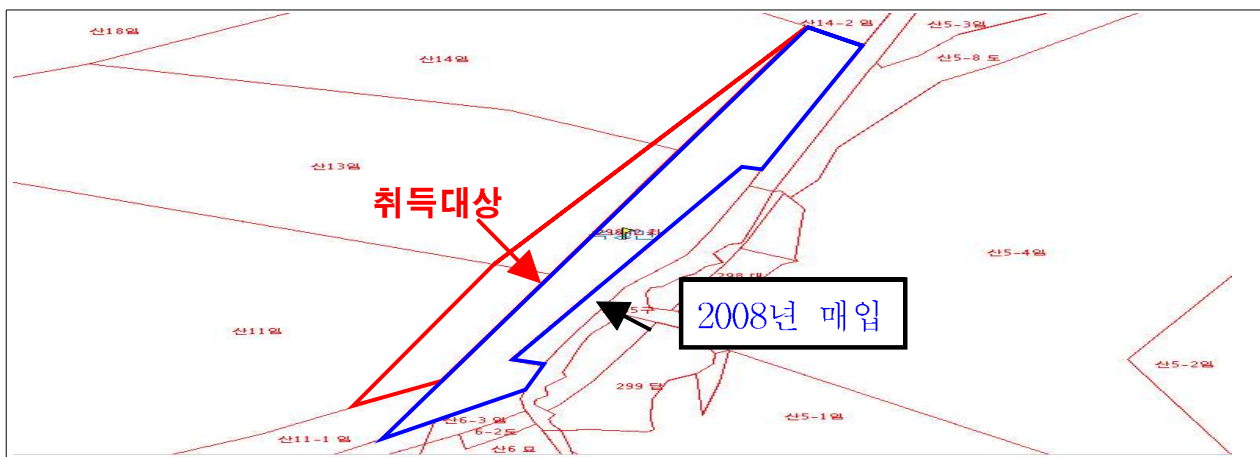
취득대상토지

□ 재산의 표시 : 구미시공설송조당 공용주차장 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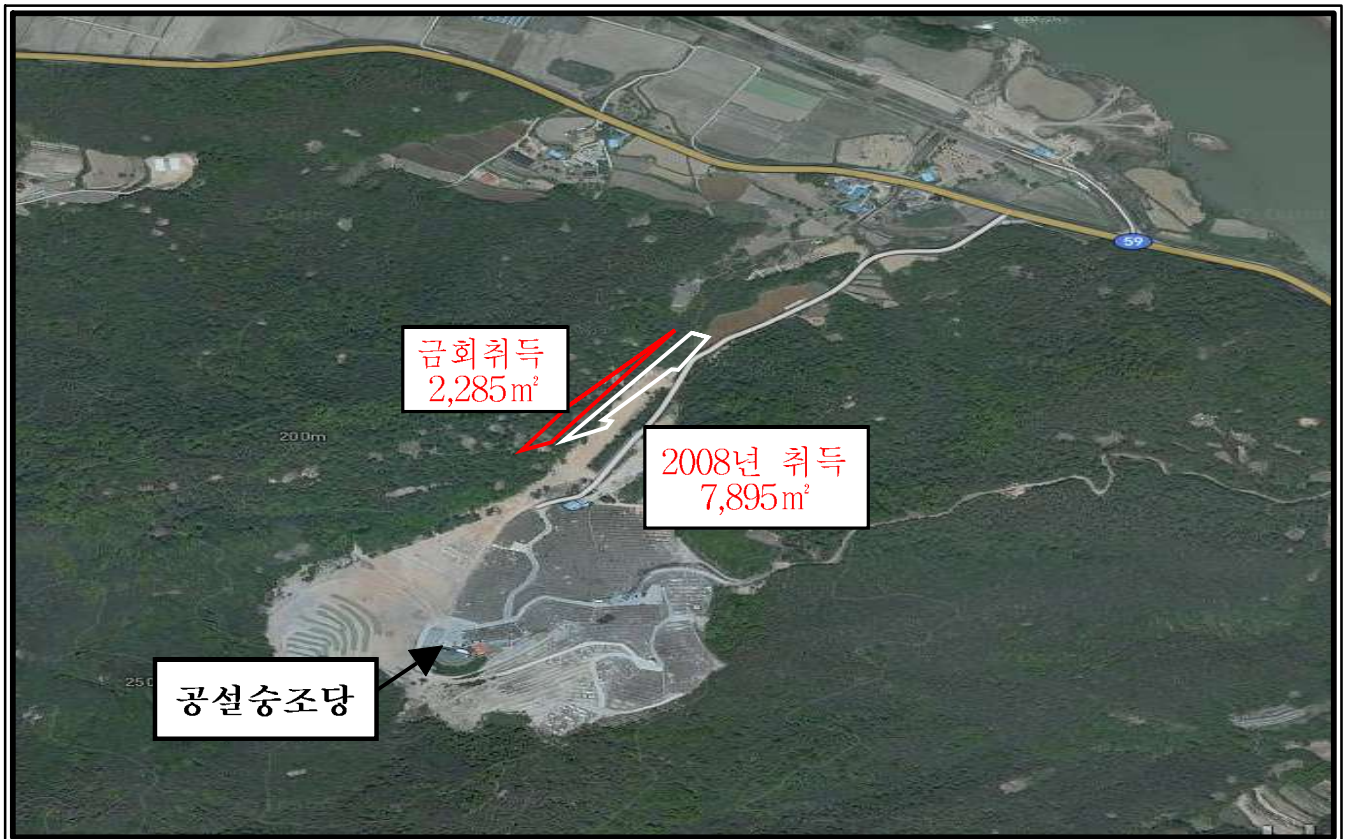
○ 소재지 :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산11번지의외 2필지

○ 지목 및 면적 : 임야(2,285㎡)

□ 지적도



□ 위치도



취득대상토지

□ 재산의 표시 : 산림에코센터 조성사업 부지

○ 소재지 : 산동면 인덕리 259-1번지의외 37필지

○ 면적 : 69,194m²

□ 지적도



□ 현황도



취 득 대 상 토 지

□ 재산의 표시 : 신라 불교 문화 초전지 조성사업

< 당 초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2011.12.23.)

○ 토 지 : 19필지 31,444m²

○ 건 물 : 3건 2,300m²

○ 기 타 : 1건 1,100m²

< 변경- 추가편입 >

○ 토 지 : 14필지 7,557m²

□ 지적도

○ 당 초



○ 추가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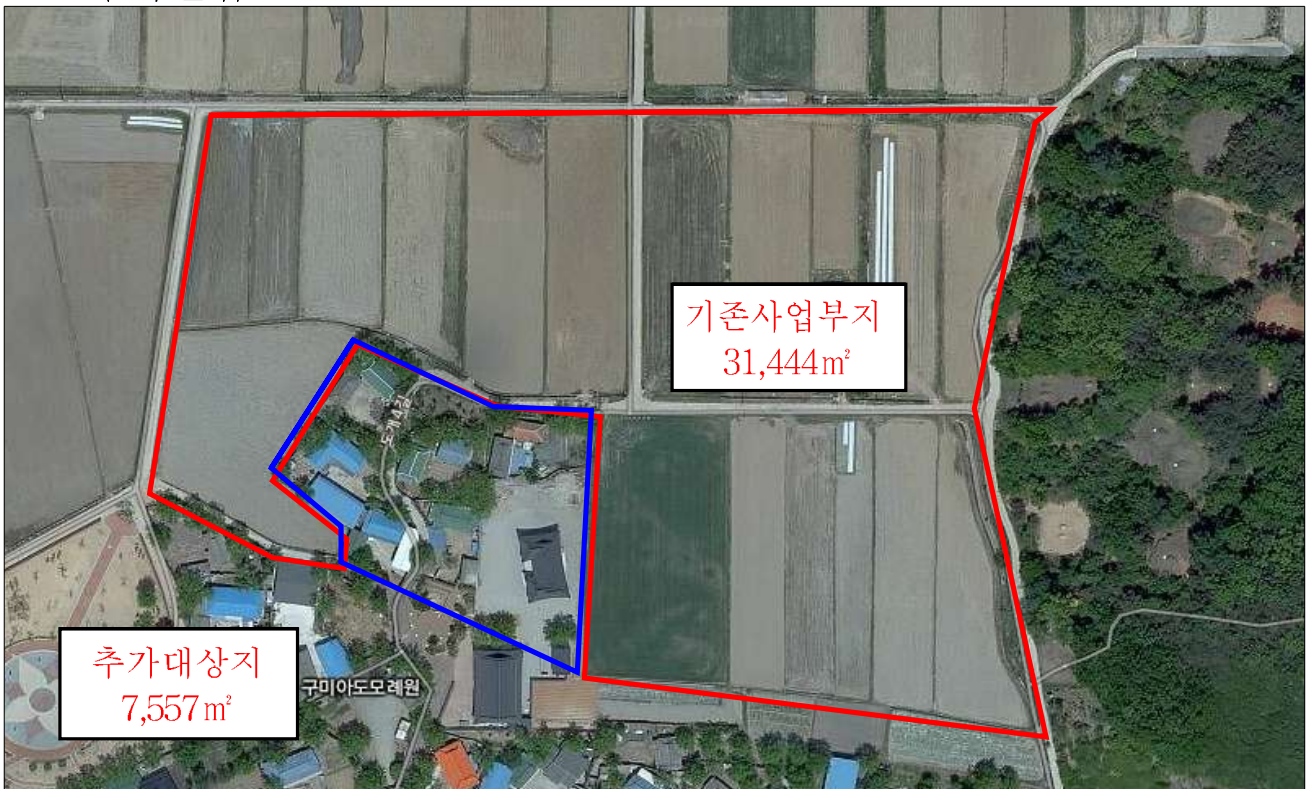


□ 위치도

○ 당 초



○ 추가편입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1. 1건당 기준가격이...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는 2천제곱미터)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